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634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 함(안 제4조제2항).

나. 보건소, 동 주민센터 등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·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명확히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.

다.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.

라. 구 홈페이지, 보건소, 동 주민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(안 제5조제5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, 제14조의4 등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”를 “폐의약품을 관내 약국, 보건소(보건지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,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·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홈페이지,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민의 책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·조정 역할을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구민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폐의약품을 관내 약국, 보건소(보건지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-----.</u></p> <p>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,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·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③ <u>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홈페이지,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</u></p>

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
여야 한다.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8. 2. 27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73호, 2018. 2. 27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불용의약품”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.
2. “폐의약품”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·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·수집·운반·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(이하 “불용의약품 등”이라 한다)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

있으며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민의 책무) ① 구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
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·조정 역할을 한다.

제6조(표창)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제973호, 2018.2.2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보건의료기본법

[시행 2024. 8. 7.] [법률 제20216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45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□ 폐기물관리법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66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

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
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
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
활계 유해폐기물” 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
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
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 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 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
보계획을 포함한다)
-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·절차 및 추
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

[본조신설 2017. 11. 28.]

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8. 17.] [환경부령 제1114호, 2024. 8. 16., 일부개정]

제16조의2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
른 생활계 유해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 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
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4. 30.>

1. 폐농약
2. 폐의약품
3.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
4.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
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